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호
의결년월일	2002.9.10 (제99회)

제안년월일 : 2002년 9월 6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주 문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제안이유

- 의정자문위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자문위원들의 자문범위, 구성인원, 임기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 의원들이 각종 의안 심의시 자문위원들의 정책 및 연구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골자

- 자문위원의 자문범위를 현실성 있게 정함. (안 제2조)
 -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각종 의안 심의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 분야의 자문”으로 개정
 - “기타 사항으로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신설
- 전문위원의 각 분야별 구성인원을 2인이내에서 6인이내로 증원(안 제3조)
- “과업수행기간”으로 되어 있는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조정

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 사항 : 자문위원수당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각종 의안 심의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 분야의 자문
5.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제2항중 “2인이내”를 “6인이내”로 한다.

제4조중 “과업수행기간으로”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임무) ①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3. (생략)</p> <p>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p> <p><u><신설></u></p>	<p>제2조(임무) ① ----- -----</p> <p>1.~3. (현행과 같음)</p> <p>4. 각종 의안 심의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 분야의 자문</p> <p>5.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p>
<p>제3조(구성) ①(생략)</p> <p>② 자문위원의 구성인원은 각 분야별 2인이내로 한다.</p>	<p>제3조(구성) ①(현행과 같음)</p> <p>② ----- 6인이내로 -----.</p>
<p>제4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u>과업수행 기간으로 한다.</u></p>	<p>제4조(임기) -----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다.</u></p>